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52호

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00호(2008.6.12.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산2-28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북촌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북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8월 18일
서울특별시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남북회담본부의 개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지정 및 와룡근린공원 면적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함.

2.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기정	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	종로구 북촌(가회동, 계동, 원서동, 안국동, 재동, 화동, 사간동, 소격동, 송현동, 팔 판동, 삼청동)일대	1,128,372.7	-	1,128,372.7	서울시고시 제2008-200호 (2008.6.12.)

3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-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-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와룡공원	근린 공원	종로구 삼청동 산2-26 일대	204,369 (39,326.2)	감)25,158.2	179,210.8 (14,168)	총독부고시 제208호 (40.3.12)	자연 녹지 지역

※ 별도로 표기된 ()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.

※ 서울시고시 제2010-11호(2010.1.21.)로 고시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와룡근린공원의 면적산정 오류로 인해 기정 면적 정정 (당초 : 1,892㎡ → 정정 : 39,326.2㎡)

• 공공청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A	공공청사	-	종로구 삼청동 산2-28 일대	-	증)22,700	22,700	-	남북회담본부

• 공공청사 건축물의 규모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건축물의 규모				비고
			건폐율	용적률	높이		
신설	A	공공청사	7%이하	19%이하	신축시	2층 이하, 8m 이하	기존현황 3층
					기존건축물 증축, 개축, 재축시	3층 이하, 15m 이하	

※ 공공청사 부지 내 임상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시 현재의 연면적 범위를 상회할 수 없음.

4. 대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
5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 없음)
6.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7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8. 열람 장소 :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02-2181-8419)
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2133-84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북촌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지형도면

